

서울특별시 강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1년 3월 4일

미래·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1년 2월 18일

나. 제출자: 강선영 의원 외 7명

다. 회부일자: 2021년 2월 25일

라. 상정일자: 제27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

미래·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·의결(2021.3.4.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: 강선영 의원)

가. 제안이유

저렴한 가격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‘착한가격업소’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물가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1)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(안 제1조~제2조)

○ 착한가격업소

- 외식업, 이·미용업,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·품질·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지정하는 업소

2) 착한가격 업소의 지정 및 취소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3조)

-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「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」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함

3)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
(안 제4조~제5조)

○ 지원내용

- ‘착한가격업소’지정 표지판 제작·교부
- 고객의 편의증진과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소모품 지급
- 구 소식지 및 구 홈페이지, SNS등을 활용한 홍보
- 방역물품 및 소득지원

4) 착한가격업소 운영 현황 점검 등을 규정함(안 제6조)

5)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영업자의 협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

(안 제7조)

6) 표창 및 시행규칙에 대한 사항을 정함(안 제8조~제9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
-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3조
- 행정안전부 「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」

나. 예산조치: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예산 기 편성

다. 해당부서: 지역경제과

라. 기 타: 입법예고(2021. 2. 19 ~ 2. 24) 결과: 의견없음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(전문위원: 서선옥)

- 본 조례안은 지역물가안정에 자발적으로 기여해 온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지원 및 지역물가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 -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,
 - 안 제2조는 용어 정의로 “착한가격업소”는 외식업, 이·미용업,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·품질·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구청장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하고,
 - 안 제3조에서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에 대한 세부기준을

행정안전부의 「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」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였으며

- 안 제5조에서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사항으로
 - ‘착한가격업소’ 지정 표지판 제작·교부
 - 고객의 편의 증진과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소모품 지급
 - 구 소식지 및 구 홈페이지, SNS 등을 활용한 홍보
 - 방역물품 및 소득지원을 규정함
-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이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, 운영현황 중 외부공개가 필요한 사항은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하였음
- 안 제7조에서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영업소 및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며, 이를 위해 구청장에게 협조하도록 하였으며
- 안 제8조에서는 표창에 대한 사항을, 안 제9조에서는 시행규칙에 대해 규정하였음

○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에 따르면 농림·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며,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소상공인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였고, 본 조례안은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소상공인의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

○ ‘착한가격업소’ 제도는 2011년부터 행정안전부 「착한가격업소 지정

및 관리지침」에 따라 운영 중이고, 행정안전부는 착한가격업소 제도 활성화를 위해 표준 조례안을 마련하여 자치단체에 조례 제정을 권고한 바가 있으며, 현재 서울시에서는 5개 자치구¹⁾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

- 우리구의 ‘착한가격업소’ 운영현황을 살펴보면, 현재 31개소의 착한가격업소가 지정되어 있으며, 2020년에는 지정업소를 대상으로 전기시설 안전점검, 착한가격업소 표지판 제작교부, 종량제 봉투 등을 지원하였음

※ 우리구 착한가격업소 지정현황

(2020. 12월 말 기준)

총계	외식업	개인 서비스업				
		소계	세탁업	이미용업	목욕업	기타
31	12	19	1	16	1	1

※ 2020년도 착한가격업소 지원현황

금액(원)			지원물품			
계	시비	구비	종량제 봉투	해충방제	표찰제작	전기 안전점검
11,352,390	9,801,390	1,551,000	50L-9,200개 20L-2,300개	15개 업소	4개소	6개 업소

※ 1년 총 3회 (종량제봉투 3회, 해충방제 1회, 전기안전점검 1회) 지원

-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,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착한가격업소의 지원과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

1) 동작구, 양천구, 영등포구, 도봉구, 마포구

마련하고, 향후 우리 구 물가 안정 및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생략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붙임 관계법령 1부.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.....

3. 농림·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

 가.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

 타. 중소기업의 육성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□ 「소상공인기본법」

제3조(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·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.

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